

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성명 (대표자)	②주민등록번호		
	③주소			
사무소	④명칭	⑤전화번호		
	⑥주사무소소재지			
기술인력	⑦성명	자격종목·등급	자격증 번호	
주요설비	⑧명칭	형명	수량	처리능력(용량)
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건설교통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	1.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. 다만,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2.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·이용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3. 정보처리기사 1급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4.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5.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6. 부가통신망사업자등록증			

※ 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건설교통부	담당부서 (전화번호)	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()
		수수료	없 음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